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의안 번호	4995
----------	------

요구연월일 : 2024. 10. 29.

요 구 자 : 최민희 의원

주 문

국회의원(추경호)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에 따라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추경호는 지난 10월 25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10월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수진 의원의 국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지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

다. 10월 24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질의 시간을 악용하여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했음. “갑질” 운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위원장 개인을 공격하며 흔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음.

라. 이는 「국회법」 제102조와 제14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임.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음. 하지만 최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지속하였고, 위원장은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최수진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였음.

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관련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질의 시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닌 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음. “갑질”, “독재”, “북한”, “폭압적”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음. 위원장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대한 인내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도 또다시 위원장을 흔들고 국정감사를 방해했음.

바.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22대 국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임위를 흔들기 위한 국민의힘 원내 전략 차원의 조직적 방해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임. 10월 25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임.

사. 국정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권한 남용임. 최민희 위원장을 징계 대상이라며 으박지르고, 열심히 일하려는 과방위를 방해하려는 국회의원 추경호야말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아. 국회의원 추경호는 과방위원장에 윤리위 제소방침을 밝히며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상임위를 열심히 운영하려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기도 하며, 국민의힘은 최민희를 제소하며 “국회의원 최민희는 임의로 발언을 제한시키고 이후 최수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권을 빼앗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는데, 이 또한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질서유지 권한을 ‘불법행위’라며 모욕한 것임.

자. 위와 같이 국회의원 추경호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